

목 차

1. 실제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신청가능한가요? 2
2.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장소가 다른 경우 2
3. 4월~6월분 모두 납기연장 적용받을 수 있나요? 3
4. 체납으로 공급정지 대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 3
5. 3월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
6. 납기연장 기간 중 이사·전출 등을 하는 경우 4
7. 20kW 초과 고객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? 5

Q1

전기사용계약자와 실제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, 납기일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?

<답 변 요 지>

- 납기연장은 전기사용계약자와 동일한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.
-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전기사용자가 명의변경(상호변경) 및 납기연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Q2

동일한 전기사용계약자이나,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장소가 다른 복수의 점포를 납기일 연장 신청시 어떻게 하나요?

<답 변 요 지>

-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전기사용 계약단위는 구분되어 있지만 재래시장 등 현장 여건상 전기사용장소가 연접되어 있어 함께 사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아울러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더라도, 소상공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.

Q3

납기연장 신청기간내 신청하면 4월~6월분 전기요금 모두 납기 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?

<답 변 요 지>

- 납기연장 신청은 4월 8일(수)부터 6월 30일(화)까지 가능하며, 당월 요금에 대해 납기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 25일 납기일 고객이 4월 28일에 납기연장을 신청한 경우, 4월분은 납기연장이 불가하고 5월~6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 납기연장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4

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정지 대상인 고객이 납기연장 제도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<답 변 요 지>

| 전기요금(월분) 구분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납기일 | 2/25 | 3/25 | 4/25 | 5/25 | 6/25 | 7/25 | 8/25 | 9/25 | 10/25 | 11/25 | 12/25 |
| 납기연장 | | | 7/25 | 8/25 | 9/25 | | | | | | |
| 미납시 단전대상 | | | 2월분 | 3월분 | | | | 4월분 7월분 | 5월분 8월분 | 6월분 9월분 | 10월분 |

-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정지 대상이 된 고객은 전기공급정지 사유를 해소한 후에 납기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상기사례의 경우 납기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2월분 전기요금이 미납이면 4.25 이후 전기공급정지 대상이 되며, 미납요금 해소 후 납기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5

3월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기연장 중인 고객이 4월부터 납기연장을 신청한 경우 언제 전기공급정지 대상이 되나요?

<답 변 요 지>

| 단전시기 구 분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납기일 | 2/25 | 3/25 | 4/25 | 5/25 | 6/25 | 7/25 | 8/25 | 9/25 | 10/25 | 11/25 | 12/25 |
| 新납기일 | | | 7/25 | 8/25 | 9/25 | | | | | | |
| 대상월분 | | | 2월분 | 3월분 | | | | 4월분 7월분 | 5월분 8월분 | 6월분 9월분 | 10월분 |

- 납기일 연장은 납기만 연기된 것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, 변경된 납기일+2개월까지 미납시 전기공급정지 시행
- 상기 사례의 경우 2월분은 4. 25까지, 3월분은 5. 25까지, 4월분과 7월분은 9. 25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공급정지 대상이 됩니다.

Q6

납기연장 기간 중 이사, 전출 등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<답 변 요 지>

- 납기연장은 고객의 일시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사정산 신청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신청한 납기연장은 취소되며, 납기일은 원래기간으로 변경됩니다.
- 舊계약자에게는 납기연장 취소에 따른 미납요금 및 잔침분의 요금을 계산한 후 납부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.

Q7

납기연장 신청한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이 제출기한 경과 후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
<답 변 요 지>

- 계약전력 20kW 초과하는 소상공인 고객은 납기연장 진행 과정이 先적용, 後검증으로 진행되며, 최종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담당자의 대기목록에 별도로 구현되어 표기됩니다.
-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제출한 고객은 한전에서 고객에게 서류 보완을 재 안내합니다.
- 2차 안내에도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납기연장은 취소되며, 미납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